**주차 관리대행 계약서**

주차관리대행 의뢰자 바운스 트램폴린파크(이하 “갑”이라 칭한다)와 주차관리 대행자 프렌즈(이하 “을”이라 칭한다)는 다음과 같이 주차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【목적】

본 계약은 방문고객의 원활한 주차 안내와 발렛파킹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대행업무 및 서비스】

1. '갑'의 영업장에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/출차 대행 및 관리
2. '갑'의 영업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안내

제3조 【대행료 및 대행료의 지급】

1. '갑'이 의뢰한 '을'의 월 대행료는 2.400.000원 VAT별도로 한다.
2. 1항의 대행료는 '을'이 매월 10일이전 '갑'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 '갑'이 '을'에게 지급한다.

제5조 【계약기간】

본 계약은 2017년 1월 12일 ~ 2018년 1월 11일까지 계약을 정한다.

제6조 【기타사항】

1. 차량보험은 삼성화재이고, 지상/지하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영업장방문 고객 중 ('을'에 의한 차량사고 및 과태료 부과 부분)은 사실관계 파악 후 '을'측에서 책임을 다한다.
2. 차량 발렛비는 3시간 기준 2천원으로 하되 이후 추가비용은 시간당 2천원으로 한다.
3.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4.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.

제7조 【분쟁해결】

1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'갑'과 '을'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.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, '갑'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.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각각 서명(또는 기명)날인 후 '갑'과 '을'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2017년 1월 12일